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6일, 노종면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3.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5. 11. 28.)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4. 9.)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6. 4. 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6. 4.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노종면의원)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이용하도록 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통한 연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연구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를 경우 연구데이터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적정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제정안 3건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단순히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가 아니라 이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 또는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하였으므로, 해당 제정안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둘째,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구데이터 확보 및 보유한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촉진이라는 개정에 따른 편익과 예상 소요 비용 사이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라 24개 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6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책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업데이트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344억 9,3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